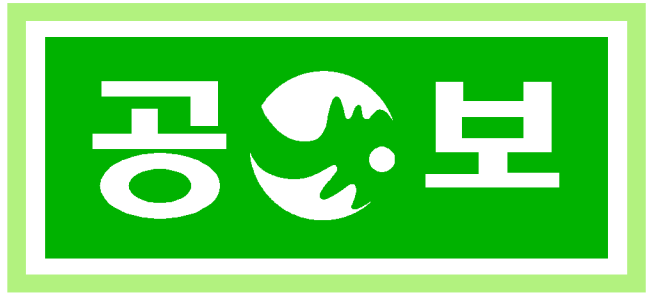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람	기 관 의 장

제 1006 호 2016. 5. 4. (수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78호[도로명주소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7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439호[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440호[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448호[16/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공고] 13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 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78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1024(매곡동) 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5. 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점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대포동 795-32	울산광역시 북구 오트벨리로 102(매곡동)	2016-05-04	현재 오트벨리로라고 불리어지고 있어 부여하였다	2013-12-30	
2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97-1번지의 89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105(중신동)	2016-05-04	기존 산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4-08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민동 1010	울산광역시 북구 모룡와산일로 24(호민동)	2016-05-04	모룡와 산면단지 내에 조성된 도로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영양향지구 978 5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73(명촌동)	2016-05-04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5	울산광역시 북구 화강동 1452-16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31-16(화북동)	2016-05-04	화동은 화북의 옛 지명이며 현재가 경감이 붙이진 곳에 지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7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73(명촌동)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명촌10길 73	2016.05.04.	건축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05. 0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439호

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

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3조의 규정에 의거,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(대표자변경)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.

2016년 5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등록번호 : 제2013-3호
2. 업 소 명 : 현대자동차(주) 울산서비스센터
3. 소 재 지 : 울산광역시 북구 임포로 317(효문동)
4. 전화번호 : 052-283-7500
5. 대 표 자 : 이원희 (전 : 윤갑한)
6. 검사항목
 - 정비분야 : 휘발유·LPG 분야, 경유
 - 확인검사 :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공기과잉률, 매연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440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 전자파일의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(별표4)
 - ‘1매’당 → ‘시간당’ 변경, 1시간 내 무료, 초과 시 30분당 1,000원 부과
- 나.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(별표4)
 - ‘1건’당 → ‘용량(MB)’당 기준 변경
 - 1MB(한글파일 60매 정도) 이하는 무료,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

3. 근거법규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,
동법 시행령 제17조, 동법 시행규칙 제7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.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세무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

- 전화번호 : 052)241-7503, 팩스번호 : 052)241-75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“본적”을 “등록기준지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【별 표4】

정보공개수수료 (제3조제3항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연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쇄물·복제본
문서·도면·사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테이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권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- 1권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권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- 1권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이 1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권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권이 1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권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장: 200원 - 1장 초과마다 5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권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- 1권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권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- 1권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500원 - 1장 초과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(10컷 기준)1회: 500원 -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2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: 1,500원 -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시술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교 >

1. 정보통신망용 활용용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본을 단납 수 있는 전산경비 기능이 있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쁜 복사할 장비가 있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원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4] 정보공개수수료(제3조제3항 관련)				[별표 4] 정보공개수수료(제3조제3항 관련)			
공개 대상	공개 방법 및 수수료			공개 대상	공개 방법 및 수수료		
	원본의 열람·사정	인쇄·사본(중리본), 복제용 인쇄용	전자파일의 열람·사정		열람·사정	사본(중리본), 인쇄용·복제용	전자파일의 열람·사정
문서 열람	○ 열람 - 1건당 매시당 1시간 이내 30원 - 10일 초과시 50원 이하 100원	○ 사본(1매 기준) - A3 이상 30원 -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0원 - 1매 초과마다 30원	○ 열람 - 1건당 매시당 1시간 이내 30원 - 10일 초과시 50원 이하 1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사본(중리본)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5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
도판, 지도 등	○ 열람 - 1매: 20원 - 1매 초과마다 100원	○ 사본(1매 기준) - A3 이상 30원 -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0원 - 1매 초과마다 30원	○ 열람 - 1매: 20원 - 1매 초과마다 100원	○ 도출데이터(오디오자료)의 열람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사본(중리본)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
녹음 테이프	○ 사정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60분 기준)마다 2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60분 기준)마다 2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녹음 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열람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사본(중리본)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
녹화 테이프 (비디오)	○ 사정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60분 기준)마다 2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60분 기준)마다 2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장 기준)마다 500원 - 10장 초과 시 1천원 이하 100원	○ 사본(중리본)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15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
영화 필름	○ 사정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2,000원	○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- 여러 건이 1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-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슬라이드의 열람 1천장 이하 200원	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본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
슬라이드	○ 사정 - 1천장 이하 200원	○ 복제 - 1천장 이하 3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천장 이하 200원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장 기준)마다 500원 - 10장 초과 시 1천원 이하 100원	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본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	○ 열람 -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시 300원 이하 1,000원
아이 크로스 필름	○ 열람 - 1시간 매시당 1시간 이내 30원 - 10일 초과시 50원 이하 100원	○ 사본 (중리본: 1장/부) - A3 이상 30원 -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0원 - 1매 초과마다 30원 ○ 장래 필름 - 1장당 6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시간 매시당 1시간 이내 30원 - 10일 초과시 50원 이하 100원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, 비디오자료)의 열람·열람 - 1건 1,500원 -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중리본)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50원	○ 열람 - 1시간 매시당 1시간 이내 30원 - 10일 초과시 50원 이하 100원	○ 열람 - 1시간 매시당 1시간 이내 30원 - 10일 초과시 50원 이하 100원
사진 사진 필름	○ 열람 - 1매: 20원 - 1매 초과마다 50원	○ 인쇄(중리본) - 1장: 50원 - 1매 초과마다 3*5 20원 5*7 30원 8*10 40원 ○ 장래 필름 - 1장당 6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람 - 1매: 20원 - 1매 초과마다 50원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, 비디오자료)의 열람·열람 - 1건 1,500원 -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중리본) - A3 이상 300원 -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- 1장 초과마다 50원	○ 열람 - 1매: 20원 - 1매 초과마다 50원	○ 열람 - 1매: 20원 - 1매 초과마다 50원

< 비고 >

1. 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신청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열람 등,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: 원상상태 등이 없거나 보편 등이 A3 규격은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필요가 없어 외부업체에 내행시키는 경우 정공인쇄 필름을 통하여 그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
3. 수수료 총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관계법령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(비용 부담)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(實費)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.

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(비용 부담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(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출력물·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구분하며,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.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7조(수수료의 금액)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448호

16/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공고

『수산업법』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『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2016/20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을 공고하오니, 어업면허를 희망하는 어업인(어촌계)께서는 2015.6.10.일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

구 분	어업면허	어업의종류 (양식방법)	양식물	면적 (ha)	수면위치	승인조건	비고
대체 개발	복합양식	수하식 (연승식)	다시마, 미역, 전복	5.0	북구 산하동	조건부 승인	

2. 우선순위결정 접수 및 공고기간 : 2015. 5. 4~ 6. 10.(36일간)

3.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시 구비서류

-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(구청비치)
-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

4. 신청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해양수산담당

5. 참고사항

- 승인 및 우선순위결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(☎052-241-80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5. 4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